

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5. 9. 12.
- 제공자 : 농림부 농업협상과
- 과 장 : 정 일 정
- 서기관 : 이 충 원
- 전 화 : 500-1736

이 자료는 2005년 9월 13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'WTO/DDA 농업협상' 제네바서 개최 - 9.13~16일 4일간, 관세감축공식 등 논의

- 도하개발아젠다(DDA) 농업협상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2005.9.13(화)~9.16(금)간 제네바 세계무역기구(WTO)에서 개최된다.
-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2004.8.1. 채택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향후 세부원칙(Modality) 마련을 위한 쟁점별 논의가 이루어지 진다.
 - ※ 세부원칙(Modality)은 관세·보조금 감축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한 구체수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, 각국은 세부원칙에 따라 이행 계획서를 작성한다.
- 이번 특별회의는 금년 하계 휴가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며, 농업협상의 주요쟁점인 관세감축공식, 민감품목, 국내보조 감축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.
- DDA 농업협상은 2001.11월 출범한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중이며, 당초 지난 7월말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농산물 수출입국간 의견대립으로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.

○ 제6차 WTO 각료회의는 12월 중순 개최 예정이며, 이때까지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.

□ 정부는 G10(농산물 순수입국 그룹), G33(개도국 그룹) 등 유사 입장국과 공조, 쟁점별 공조 세력 규합 등 다각적인 협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. 또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,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협상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있다.

○ 정부는 이번 특별회의에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.

첨부 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응방향

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응방향

2005. 9.

농 립 부

목 차

1. DDA 농업협상 경과와 대응	1
2. 주요 쟁점별 논의동향	4
3. 향후 대응방향	8
<참고 1> DDA 농업협상 주요 그룹현황	9
<참고 2> G20 제안서 주요내용	10
<참고 3> DDA 주요 통상용어	11

1. DDA 농업협상 경과와 대응

추진경과

-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2001.11월 도하개발아젠다(DDA) 협상 출범
 - '03.3월 협상 세부원칙(Modality)을 담은 하빈슨(Harbinson) 초안 채택에 실패한 후 '03.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(Framework)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
- '04년초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7월말까지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, '04.8.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
 - 이후 '05.7월까지 총 10회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3개 채널*을 활용하여 기술적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
 - * 3개 채널 : 전체회원국회의(CR process), 비공식심층협의(Room D), 소규모 핵심국가 협의(Room F)
 - '05.5월 종량세의 종가상당치 계산방식 합의 이후 DDA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시장접근분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
 - 관세감축공식 등 핵심쟁점에 대해 수출입국간 입장 대립 지속
- 대련 각료회의('05.7.12~13) 및 주요국 집중 협의('05.7.21~26) 등을 통해 7월말 세부원칙 초안(First Approximation)을 마련코자 하였으나, 수출입국간 입장 대립으로 실패

□ 그로서(Groser) DDA 농업협상 그룹 의장은 6.27일에 이어 제출한 7.28일 평가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농업협상을 평가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

○ 협상 교착상태이나,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어 정치적 결단이 있으면 협상의 진전이 가능하다고 평가

* 대런 각료회의(7.12~13) 계기 G20 제안서가 타협(middle ground)을 위한 출발점(a starting point)이라고 평가

○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 등에 신축성 반영 문제, 감축 대상보조(AMS) 최대 사용 3개국(EU, 일본, 미국)의 처리 문제를 향후 협상 진전의 관건으로 지적

□ 향후 DDA 농업협상은 금년 12월 홍콩각료회의시 세부원칙(Modality) 합의를 목표로 9월경부터 빠르게 전개될 전망

○ WTO 일반이사회(7.29)에서 미국, EC 등 주요국들은 협상 미진전 상황에 대하여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협상 진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 표명

* Portman 美 무역대표(USTR)는 CAFTA(중미국가들과의 FTA) 비준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, 앞으로는 DDA협상에 집중하겠다고 언급

○ 9월 이후 협상 일정은 Pascal Lamy 신임 WTO 사무총장, Crawford Falconer 신임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(뉴질랜드 주제네바대표부 대사)등 새 의장단 구성 후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

그간의 대응

□ DDA협상 개시이후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

○ 모든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입장 개진하고
농산물협상 종합제안서, 스위스공식 반박제안서 등 9차례에
걸쳐 농업협상제안서를 WTO에 제출

- NTC, G10, G33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공동각료선언문 채택

○ 7월말 세부원칙 초안 마련을 위한 논의시 G10, EC와의
공조를 통해 관세상한 도입 반대, 관세감축공식의 신축성
반영 등을 지속 주장

□ 협상진전 상황에 따른 지속적인 영향 분석 실시

○ 세부원칙협상 대응을 위한 관세감축, 민감품목처리, 국내보조
감축방식 등에 대한 분석 실시

○ 품목별 Data Base 구축으로 신속한 협상 대응체계 마련

□ 협상과정에서 농업인단체 등 NGO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
협상 동향을 설명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

○ 농민단체 대표들이 제네바 현지에서 관계국 대사 면담('05.6)
및 농민단체 실무대표 제네바 회의 동행('05.7)

○ 농민단체 설명회 6회('05.5.4, 5.23, 5.31, 6.30, 7.14, 7.25), 시도 설명회(5.9),
기자설명회(7회) 등 협상동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

2. 주요 쟁점별 논의동향

시장접근 분야

□ 관세감축

- 기본골격은 관세수준별로 구간을 나누고 고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토록 규정
- 관세 구간수는 3~5개, 최상위 구간의 경계는 60~120% 내에서 설정하는 방안들을 논의중
 - 수입국은 가급적 구간수를 작게 하려는 입장이나, 수출국은 구간수를 늘리려는 입장
- EC와 G10 국가들은 점진적인 관세감축과 신축성 보장을 주장, 수출국은 고율관세의 대폭 감축 주장
 - 스위스 공식과 UR 공식간 절충안인 선형감축방식*을 출발점 (starting point)으로 사용하여 논의
- * 선형감축방식 : 관세구간대별로 단일의 관세 감축율을 적용하는 방식
- 수출국은 고율관세 대폭 감축의 입장에서 관세상한 설정, 수입국은 상한 설정 불가 입장을 각각 주장

□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(SSG)

- 기본골격은 존치 여부에 대해 향후 협상 대상으로 규정
- 수출국은 철폐를 주장하는 반면, 수입국은 현행 유지 주장

□ 민감품목

- 기본골격은 민감품목에 대해서 관세감축을 줄이는 대신 저율관세수입물량(TRQ)을 늘리도록 합의
 - 민감품목의 범위, 관세감축 및 TRQ증량 수준은 추후 협상
- 민감품목의 신축성 부여와 관련, 수출국은 감축약속의 수준은 동일하되 이행수단 선택에만 신축성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, 수입국은 감축약속의 수준도 차별화하자는 입장
 - 수출국은 민감품목의 관세를 적게 줄이기 위해서는 TRQ물량을 충분히 늘려야만 한다는 입장(Full compensation)
 - 수입국(G10)은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(NTC)을 감안하여 민감품목의 수와 선정방법에 신축성이 부여되고, 관세감축과 TRQ 증량도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(Less than full compensation)

□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(SP)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(SSM)

- 기본골격은 개도국에 대하여 식량안보, 생계보장 및 농촌개발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(SSM) 인정
 - 특별품목은 개도국 우대 차원에서 민감품목보다 더 넓은 융통성 부여
- G33 등 개도국은 특별대우의 확대를 주장, 선진국은 특별 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를 가급적 축소하려는 입장

국내보조 분야

□ 보조 총액 및 개별 보조의 감축

- 기본골격은 보조총액을 구간별로 감축토록 하고, 이행
첫해에 20% 이상 감축 의무 규정
 - 감축보조(AMS), 생산제한 제도하의 직접지불(Blue Box), 최소허용
보조(De-minimis) 등 3가지 보조금을 합한 총액감축과 함께
개별보조도 감축기로 합의
 - * AMS : 가격 및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감축대상 보조금
 - * Blue Box : 생산제한 제도 운영을 전제로 감축약속이 면제되는 보조금
 - * De-minimis : 감축대상 보조금이나 농업총생산액의 일정 비율(例 :
선진국 5%, 개도국 10%)내에서는 허용
- 보조총액과 감축보조 절대액을 기준으로 3~4구간을 설정하고
3개국(EC, 일본, 미국)은 상위구간, 여타국은 하위구간에
배치한다는데 의견 접근
 - *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중 AMS 양허한도 8위(총 35개국)
- 구간의 수, 상위 3개국의 구간 배치, 구간대별 감축율,
개도국 우대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가간 입장 차이

□ 최소허용보조(De-minimis) 감축 및 블루박스 기준

- 기본골격은 최소허용보조에 대하여 개도국 우대원칙을 인정하였으나, 감축수준은 추후 협상토록 규정

* 현재 선진국은 농업총생산액의 5%, 개도국은 10%를 인정

- 개도국과 신규 가입국에게는 최소허용보조의 감축을 면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EC·미국 등은 반대
- 수입국은 최소허용보조의 감축을 최소화할 주장
- 블루박스에 대하여 기본골격은 생산을 제한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직접지불을 인정하였으나 구체 요건은 계속 협상 토록 규정
- 농업총생산액의 5%를 블루박스 허용한도로 인정
-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 요건을 최대한 완화하려는 입장이거나 수출국들은 요건 강화를 주장

□ 허용보조(Green Box)

- 현행 허용보조의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직접 지불 요건의 엄격화, 개도국 우대 조항 추가 등에 대하여 논의
- 브라질, 호주, 캐나다 등은 현행 허용보조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
- 농산물 수입국, 미국, EC 등은 허용보조 기준변경에 반대

3. 향후 대응방향

< 협상 대응 >

□ 향후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을 최소화해 집중 노력

- 특히, 관세상한 설정 저지, 민감품목의 TRQ 증량 최소화, 민감품목·특별품목 신축성 확보에 협상력 집중

□ G10, G33 등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지속 추진, 우리의 관심사항을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

- 모든 회의에 정부대표단 파견, 우리 입장을 강력히 주장

□ 세부원칙 확정 이후 양허협상 단계에서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

< 홍보 및 국내 보완대책 >

□ DDA 협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강화

- 협상 주요단계마다 농업인, 농민단체, 언론계, 학계 등에 대해 협상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에 보고

□ 협상결과 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농업·농촌종합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탄력적으로 수정할 계획

<참고 1>

DDA 농업협상 주요 그룹현황

구분	대상 국가	기본입장	비 고
MF6	한국, EC, 일본, 스위스, 노르웨이, 모리셔스 ※ MF : Multi-functionality (다원적 기능) ※ NTC : Non Trade Concerns (비교역적 관심사항)	-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(농업의 NTC 주장) · 관세감축에 있어 UR방식 선호	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배려 주장
G-5	미국, EC, 호주, 브라질, 인도		농업협상주요국 그룹
G-10	한국, 일본, 스위스, 노르웨이, 대만, 이스라엘, 아이슬랜드, 리히텐슈타인, 모리셔스	-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· 관세상한 설정 반대 · 관세감축에 있어 신축성 주장	수입국 그룹
케언즈 그룹	캐나다, 칠레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파라과이, 우루과이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태국, 호주, 뉴질랜드, 콜롬비아, 말레이시아, 남아공, 볼리비아, 코스타리카, 과테말라	- 농산물 수출국 입장 대변	수출국 그룹
G-20	아르헨티나, 브라질, 볼리비아, 중국, 칠레, 에콰도르, 과테말라, 인도, 멕시코, 파라과이, 필리핀, 남아공, 태국, 쿠바, 파키스탄, 베네수엘라, 이집트, 나이지리아, 인도네시아 등	- 개도국 입장 대변 · 선진국의 국내보조 대폭 감축, 수출보조 철폐 · 개도국 우대 강화	강경 개도국그룹
G-33	한국, 중국, 도미니카, 온두라스, 인도, 인도네시아, 자메이카, 케냐, 마다가스칼, 모리셔스, 몽골, 모잠비크, 나이지리아, 니카라과, 파키스탄, 파나마, 페루, 필리핀, 세네갈, 스리랑카, 터키, 우간다, 베네수엘라 등	- 개도국 입장 반영 · SP 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 수입제한제도(SSM)에 중점	특별품목 그룹
G-90	ACP, LDC, 아프리카그룹 국가들로 구성 모리셔스, 남아공, 이집트 등	- 아프리카, 중남미, 아시아 일부국가 포함	
ACP 그룹	아프리카, 카리브해, 태평양지역 77개 국가	- 로메협약에 의해 EC와 특혜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	

G20 제안서 주요내용

<'05.7.12, 대런 각료회의시 제안>

1. 관세감축방식 : 단순선형감축

- 스위스공식과 UR공식간 절충
- 개도국 관세감축율은 선진국의 2/3 보다 낮은 수준

2. 구간수 : 선진국 5개, 개도국 4개

- 선진국 : 0/20/40/60/80% (관세상한 100%)
- 개도국 : 0/30/80/130% (관세상한 150%)

3. 민감품목 (Sensitive Products)

- 제한된 개수의 세번(tariff lines)
-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 이탈이 클수록 수입쿼타 증량

4. 개도국 특별품목 (Special Products), 특별긴급수입제한(SSM)

-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이 개도국 우대의 중요요소임을 강조하고, G33(한국, 인니, 인도 등 개도국 특별품목 그룹)과 협력 추진

5. 현행 특별긴급수입제한(SSG)

- 선진국 특별긴급수입제한 폐지

6. 관세단순화

- 종량세를 종가세로 단순화

DDA 주요 통상용어

□ DDA(Doha Development Agenda : 도하 개발 아젠다) 협상

- 카타르 도하에서 2001년 11.14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체제

□ TRQ(Tariff Rate Quota : 저율관세수입물량)

- 특정품목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세 제도

□ SP(Special Product : 특별품목)

-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은 개도국의 경우 식량안보, 생계유지,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는 지침을 주고 있으며, 특별품목의 선정과 대우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음

□ AMS(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: 보조총액측정치)

- 농업보조 수준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특정 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 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된 연간 보조 수준을 의미

☐ De-minimis(최소허용보조)

- 농산물의 보조금 총액이 총생산액의 5%이하인(개도국은 10%) 경우를 최소허용보조라 하며 감축의무를 면제함

☐ Blue Box(생산제한 제도하의 직접지불)

- 생산제한 제도하의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되며,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시행된 적이 없음

☐ NTC(Non-Trade Concerns :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)

- 농산물 무역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농업이 지닌 고유한 역할로서, 식량안보·환경보전·고용유지·지역개발 등 사회적·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기능

☐ SSM(Special Safeguard Mechanism :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)

-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은 개도국의 경우 식량안보·농촌개발·생계유지를 위해 개방에 의해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 새로운 긴급수입제한제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, 부과대상품목 선정기준 및 품목수에 대해 협상이 진행중에 있음

☐ SSG(Special Safeguard : 특별긴급관세)

- UR협정에 따라 개방에 의해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,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WTO 양허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도록 한 피해구제제도